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신종갑 의원)

의안 번호	22-100
----------	--------

발의년월일 : 2022. 9. .

발의자 :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김영미, 남해석, 안미자, 이상원,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1. 개정이유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명시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 제2조)

다. 적용범위에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라.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및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제6조)

마. 종전의 (제4조)의 제목 “(공개)”를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변경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시점을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명시(안 제7조)

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제13조)

사. 용역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제18조)

3.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2. 9. 13. ~ 9.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4조) 제1항 전단 중 “후 지체 없이”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부서의 역할과 의무) ①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4.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구정 관련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정책연구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3.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대상 과제로 선정

제7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공개)”를 “(정책연구용역의 공개)”로 한다.

제8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주관부서를 담당하는 국·소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 검토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결과의 활용) 주관부서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u></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 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 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 로써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 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 관 리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하는 부서를 말한다.</p> <p>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활용할 부서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시 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 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4.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 ----- -----.</p> <p>1. ~ 4. (현행과 같음)</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부서의 역할과 의무) ①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4. 그 밖의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구정 관련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2. 정책연구용역 관련 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 방안
3. 정책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정책연구용역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대상 과제로 선정

제4조(공개)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

제7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

----- 날로부터
터 3개월 이내에 -----

----- <후단 삭제>

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②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주관부서를 담당하는 국·소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

<신 설>

<신 설>

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신 설>

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 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안건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검토결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주관 부서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용역결과의 활용) 주관부서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비밀엄수) 심의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 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2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16조 수당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10명*3회*85%=1,785,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						
	소계(a)						
세출	○						
	○ 위원회수당	1,785	1,785	1,785	1,785	1,785	8,925
	소계(b)	1,785	1,785	1,785	1,785	1,785	8,925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구비		1,785	1,785	1,785	1,785	1,785	8,925
합계		1,785	1,785	1,785	1,785	1,785	8,925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포1번가연구단 여수진
연락처	02-3153-808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위원회 참석수당 70,000원*10명*3회*85% = 1,785,000원